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3
----------	------

제안일자 : 2010. 3.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각 시·도교육청 표준정원이 변경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0호)됨에 따라 우리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정원에 맞추어 증원하기 위함.

## 2. 개정근거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및 제19조(정원의 규정)
- 다.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0호, 2009. 12. 14)

## 3.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073명**(2,981명→3,073명, 92명 증가)으로 함 (안 제2조)
- 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2,968명에서 92명 증가한 3,060명으로 함 (안 제2조제2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6.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 붙임

나.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조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0호, 2009.12.14) : 붙임

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문 : 붙임

라. 입법예고 :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의 예외)

마.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바. 교육규제 : 신설·강화 규제 해당없음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2,981명” 을 “**3,07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968명” 을 “**3,060명**”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981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p> <p>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13명</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u>2,968명</u></p> <p>3. ~ 5. (삭제)</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3,073명</u>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3,060명</u></p>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9조 (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0호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2011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단위 : 명)

구 분	표 준 정 원	보 정 정 원	비 고
서울특별시교육청	6,838	7,043	
부산광역시교육청	3,495	3,599	
대구광역시교육청	2,455	2,528	
<b>인천광역시교육청</b>	<b>3,073</b>	<b>3,165</b>	
광주광역시교육청	1,601	1,649	
대전광역시교육청	1,711	1,762	
울산광역시교육청	1,542	1,588	
경기도교육청	12,247	12,614	
강원도교육청	3,591	3,698	
충청북도교육청	2,918	3,005	
충청남도교육청	3,959	4,077	
전라북도교육청	3,783	3,896	
전라남도교육청	4,610	4,748	
경상북도교육청	4,882	5,028	
경상남도교육청	5,158	5,312	
<b>총 계</b>	<b>61,863</b>	<b>63,712</b>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1998. 11. 25.	공포	조례 제3280호
개정	2000. 5. 22.	공포	조례 제3437호
개정	2001. 2. 26.	공포	조례 제3513호
개정	2002. 4. 22.	공포	조례 제3602호
개정	2003. 3. 31.	공포	조례 제3658호
개정	2003. 12. 22.	공포	조례 제3707호
개정	2004. 3. 22.	공포	조례 제3727호
개정	2004. 11. 1.	공포	조례 제3781호
개정	2006. 3. 20.	공포	조례 제3887호
개정	2008. 3. 31.	공포	조례 제4159호
개정	2009. 4. 6.	공포	조례 제4278호
개정	_____ . _____ . _____ .	공포	조례 제 _____ 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 11. 1, 2006. 3. 20, 2008. 3. 31, 2009. 4. 6, 20 . . . . .>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13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060명 <개정 2004. 11. 1, 2006. 3. 20, 2008. 3. 31, 2009. 4. 6, 20 . . . . .>
3. 삭제 <2003. 3. 31>
4. 삭제 <2006. 3. 20>
5. 삭제 <2008. 3. 31>

**제 3 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 11. 25. 조례 제3280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5. 22. 조례 제3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26. 조례 제3513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2. 4. 22. 조례 제3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31. 조례 제3658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2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한시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3. 12. 22. 조례 제3707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2조 제5호의 한시정원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4. 3. 22. 조례 제3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 조례 제3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20. 조례 제3887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2조제5호의 한시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 3. 31. 조례 제4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6. 조례 제4278호>

-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 호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 . .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